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6-45호
2026. 9. 23.(수)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공 고(5)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공고 제2026-988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1002호) 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1003호) ... 2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1004호) ... 37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1005호) ... 48

공 람									
-----	--	--	--	--	--	--	--	--	--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38조 규정에 의거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 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I.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1. 열 람 기 간 : 2026. 9. 30. ~ 10. 29.
2. 공시기준일 : 2026년 6월 1일
3. 대 상 : 대전 대덕구 대전로 1174(오정동 27-1)외 29호
4. 공 시 사 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5. 열 람 장 소 : 대덕구청 세정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II.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 청 기 간 : 2026. 9. 30. ~ 10. 29.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 청 방 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대덕구청 세정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제출
4. 결 과 통 지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2026. 1. 1. ~ 5. 31.까지 토지의 분할 ·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2026. 6. 1. 기준으로 주택특성 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 2인의 검증으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대덕구청 세정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① (수집·이용 목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

② (수집항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선택) 일반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정보는 내부 문서관리 기한에 따라 10년간 보존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셔도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제출 접수·신청 및 결과 회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수집항목)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수집항목) 법정대리인 성명, 휴대전화번호

(수집·이용 목적)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정보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정보는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1개월간 보존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제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만 14세 미만 아동과 법정대리인을 제외한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 등으로 가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대리인은 1차적으로 아동의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에 해당되며(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 지정은 관련 법률(민법 제931조, 제932조)에 따릅니다.
- 첨부한 자료로 법정대리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구정 방향과 핵심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조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본청 기구의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신설: 전략사업과, 도시사업과, 주차관리과

2) 명칭 변경

- (과 단위) 인구정책과 → 미래교육과, 어르신장애인과 → 노인장애인과,
경제과 → 기업에너지과, 자원농생명과 → 경제산업과, 주택

경관과 → 건축과, 신청사건립과 → 공공청사과

나. 사업소 폐지에 따라 장(章) 및 조문 번호를 정비함(안 제4장, 제16조부터 제1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실

(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almost52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실 담당자 조연진(전화: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를 “직속기관에”로 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5. 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인구정책과”를 “미래교육과, 전략사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약사업 총괄

10. 미래정책 과제 발굴

제8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주민자치”를 “남북교류협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12호) 중 “자치분권”을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어르신”을 “노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제과, 환경과, 자원농생명과”를 “기업에너지과, 경제산업과, 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과학 및 기술”을 “과학·기술 및 상업·공

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상업 및 공업”을 “민생고용 및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18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공원녹지과, 주택경관과, 신청사건립과”를 “도시사업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공청사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공원”을 “공원·산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산림”을 “대청공원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제20호 및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0호(중전의 제21호) 중 “주택관리”를 “공동주택 및 주택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

22.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3. 구 본청 등 영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 중 “교통과”를 “교통과, 주차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관리”를 “구성·운영·관리”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사업소”를 “하부행정기관(동)”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 앞의 “제5장 하부행정기관(동)”을 삭제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신설·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미래전략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돌봄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녹지국장, 안전교통국장”을 “본청 국장”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기획실장, 환경업무담당 과장, 주택업무담당 과장, 건설업무담당 과장, 교통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택경관과장, 서기는 주택관리팀장”을 “업무담당 과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노인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노인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어르신정책팀장”을 “노인업무 주무팀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통과장으로”를 “업무담당 과장으로”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제환경국장 및 경제과장”을 “업무담당 국장 및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교육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인구정책과”를 “미래교육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자원농생명과”를 “경제산업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경제과”를 각각 “기업에너지과”로,
국토교통부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주택경관과”를 “건축과”로, 금융위원회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중 “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나목·다목의 협업기능반란 가)의 “어르신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 같은 란 나)의 “자원농생명과”를 “경제산업과”로, 같은 란 라)의 “자원농생명과”를 “경제산업과”로, “주택경관과”를 “건축과”로, 같은 란 마)의 “경제과”를 “기업에너지과”로 하고, 비고(근무방법) 제1호 상황관리총괄반의

“안전총괄과”를 “재난 주관부서”로 한다.

별표 5의 1. 편성기준의 협업기능반란 나)의 “자원농생명과”를 “경제산업과”로,
같은 란 마)의 “경제과”를 “기업에너지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통과”와 “전화번호”를 삭제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덕구: 부구청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할 국장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미래전략국장,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실”을 “전략사업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건소장·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보건소장·사업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보건소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고, 수임기관란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소관부서란 중 “자원농생명과”를 “경제산업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후단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장애인복지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경제환경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업무담당자”를 “기금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제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을 “시설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하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①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청년청소년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신청사건립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농생명과장과 경제과장”을 “지역먹거리 업무담당 과장과 기업에너지과장”으로 한다.

②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제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업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제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㉔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㉕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동)”으로 한다.

㉖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리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㉗ 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위생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㉘ 대전광역시 대덕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 환경과장”을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㉙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경제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㉚ 대전광역시 대덕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경제환경국장, 위생과장”을 “업무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경관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택경관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경관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구 본청의 국장, 실·과장의 직급과 <u>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u> ,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u>직속기관 및 사업소의</u>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 ---- <u>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u> <u>장의 직급 및</u> ----- -----. ② <u>직속기관에</u> ----- ----- -----.
제5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u> 6. <u>공약사업 총괄</u> 7. ~ 13. (생략)	제5조(기획실) ----- -----. 1. ~ 4. (현행과 같음) 5. <u>주요업무 계획에 관한 사항</u> <u><삭 제></u> 6. ~ 12. (현행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제7조(미래전략국에 두는 과) ① 미래전략국에 <u>인구정책과</u> , 문화관광체육과, 미디어홍보과, 도서관운영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략) 3. <u>일자리창출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4. <u>민생고용에 관한 사항</u>	제7조(미래전략국에 두는 과) ① ----- <u>미래교육과, 전략사업과</u> ----- -----. ② ----- -----.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신 설>

<신 설>

5. ~ 10. (생 략)

11. ~ 24. (생 략)

제8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11.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12.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13. ~ 23. (생 략)

제9조(복지돌봄국에 두는 과) ①
복지돌봄국에 통합돌봄과, 생활
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
친화과를 둔다.

② 복지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어르신 및 장애인에 관한 사
항

7. ~ 10. (생 략)

제10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 경제과, 환경과,
자원농생명과, 위생과를 둔다.

9. 공약사업 총괄

10. 미래정책 과제 발굴

3. ~ 8. (현행 제5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

11. ~ 24. (현행과 같음)

제8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2. 남북교류협력-----
--

11. 주민자치 및 자치분권----
--

13. ~ 23. (현행과 같음)

제9조(복지돌봄국에 두는 과) ①

----- 노인장애인과-----
-----.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노인 -----
--

7.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 기업에너지과, 경
제산업과, 환경과-----.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과학 및 기술에 관한 사항

6. 상업 및 공업에 관한 사항

7. ~ 16. (생략)

<신설>

17. ~ 23. (생략)

제11조(도시녹지국에 두는 과) ① 도시녹지국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주택경관과, 신청사건립과를 둔다.

② 도시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7. (생략)

8. (생략)

9. 공원에 관한 사항

10. 산림에 관한 사항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과학·기술 및 상업·공업-----

6. 민생고용 및 일자리창출 지원-----

7. ~ 16. (현행과 같음)

17.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18. ~ 24. (현행 제17호부터 제23호까지와 같음)

제11조(도시녹지국에 두는 과) ① ----- 도시사업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공청사과--.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개발제한구역 -----

<삭제>

7.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7호와 같음)

8. (현행과 같음)

9. 공원·산림----

10. 대청공원 관리--

11. ~ 19. (생략)

20.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21.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2. (생략)

<신설>

제12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재난안전과, 건설
과, 교통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
항

12. ~ 14. (생략)

제4장 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
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
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
다.

제17조(소장) 시설관리사업소에는

11. ~ 19. (현행과 같음)

<삭제>

20. 공동주택 및 주택관리----

--

22. 청사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
한 사항

21. (현행 제22호와 같음)

23. 구 본청 등 영선에 관한 사
항

제12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 교통과, 주차관리과-----.

②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조성·운영·관
리-----
--

12. ~ 14. (현행과 같음)

제4장 하부행정기관(동)

<삭제>

<삭제>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시설관리사업소
의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본청 외 공공건축물에 관한
사항
2. 공공건축물 신축 및 기능보
강 등에 관한 사항
3. 주관부서 계획에 따른 공공
건축물 건축·공사감독에 관
한 사항
4. 이관된 공공건축물 유지보수
에 관한 사항
5. 대청공원 및 주변 습지 등 유
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청문화전시관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동)

제19조 ~ 제21조 (생 략)

<삭 제>

<삭 제>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9조부
터 제21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

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정책(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19명으로 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793명 → 798명

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다. 정원 총수 조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실

(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almost52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실 담당자 조연진(전화: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793명”을 “798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2% 이내	30% 이내	6% 이상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25% 이내	25% 이내	25% 이내	25% 이내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819				
정무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반직	소계	814				
	3급	1	1			
	4급	7	6		1	
	5급	49	30	3	4	12
	6급 이하	757				
별정직	소계	4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8급 상당	1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 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 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14명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819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793명</u>	1. ----- <u>798명</u>

비 용 추 계 서

1. 의 안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5급 2명, 8급 3명 증원
- 관련조문: 제2조 및 안 별표 3

3. 비용추계 전제

- 비용 추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함.
- 매년 인건비 3%(최근 3년 평균) 인상으로 추계함.

4.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총비용	335,982	346,061	356,444	367,137	378,151	1,783,775
세입	-	-	-	-	-	-
세출	335,982	346,061	356,444	367,137	378,151	1,783,775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산출근거: 2026년 본예산 기준(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포함)
- 산출내역: ㉠ x 2명=195,332천원, ㉡ x 3명=130,863천원

구분	5급㉠	8급㉡
연봉액(단위: 천원)	97,666	43,621

6. 재원조달 방안

가.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자체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등)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합계
합 계	335,982	346,061	356,444	367,137	378,151	1,783,775

나.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자체수입 조달

7. 부대의견 : 인력 재배치를 우선하고 필요 최소 인원만 증원

8. 협의사항 : 해당없음

9. 작 성 자 : 기획실장 고영각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

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조정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1) 정원: 814명 → 819명(5명 증가)

2)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 ▶ 본청 550명 → 567명(17명 증가)
- ▶ 의회사무기구 21명 → 21명(변동 없음)
- ▶ 직속기관 53명 → 52명(1명 감소)
- ▶ 사업소 14명 → 0명(14명 감소)
- ▶ 동 176명 → 179명(3명 증가)

3)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5명 증가)

- ▶ 5급: 47명 → 49명(2명 증가)
 - 행정 · 시설 1명
 - 행정 · 공업 · 시설 1명
- ▶ 8급: 239명 → 241명(2명 증가)
 - 사회복지 · 간호 2명
- ▶ 별정직: 3명 → 4명(1명 증가)
 - 8급 상당 1명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실

(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almost52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실 담당자 조연진(전화: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단위 : 명)

직급 ·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총 계			819	567	21	52	179
총괄	정무직		1	1			
	일반직		814	562	21	52	179
	별정직		4	4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구청장		1	1			
일반직 계			814	562	21	52	179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6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6	6			
	과학기술서기관		1			1	
5급	소계		49	30	3	4	12
	행정		12	10	2		
	의무		2			2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사서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8	8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사서·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		3				3

직급 ·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5급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사서·간호·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공업·간호·환경		1				1
	행정·농업·간호·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6급	소계		192	150	5	11	26
	행정		66	55	4		7
	세무		9	9			
	전산		1	1			
	사회복지		13	11			2
	사서		3	3			
	공업		2	2			
	녹지		1	1			
	보건		1	1			
	간호		2			2	
	시설		11	11			
	운전		1	1			
	행정·세무		10	6			4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6	4			12(4)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3	3			
	행정·보건		4	3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16	15	1		
	행정·방송통신		1	1			

직급 ·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6급	농업·수의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2			2	
	방재안전·운전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공업·녹지·환경·시설		2	2			
7급	소계		258	175	11	20	52
	행정		102	61	8	1	32
	세무		15	15			
	전산		2	2			
	사회복지		37	19			18
	사서		6	6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10	10			
	농업		1	1			
	녹지		5	5			
	보건		8	5		3	
	의료기술		1			1	
	간호		9			9	
	환경		5	5			
	시설		19	19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간호조무		1			1	

직급 ·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7급	시설관리		1	1			
	운전		5	4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서		3	3			
	행정·시설		3	3			
	사회복지·간호		4	1		1	2
	농업·수의		1	1			
	보건·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환경·방재안전		4	4			
8급	소계		241	158	2	14	67
	행정		70	38	1	1	30
	세무		11	11			
	전산		4	4			
	사회복지		48	24			24
	사서		2	2			
	방호		1	1			
	공업		5	5			
	농업		2	2			
	녹지		3	3			
	보건		6	3		3	
	의료기술		3			3	
	간호		5			5	
	환경		5	5			
	시설		25	25			
	방송통신		3	2	1		
	시설관리		1	1			
	운전		4	4			

직급 ·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8급	통신운영		1	1			
	사무운영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4	3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4	3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6	6			
	사회복지·간호		12				12
	공업·시설		1	1			
	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		1			1	
	환경·시설		1	1			
	방재안전·운전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9급	소계		66	42	0	2	22
	행정		32	15		1	16(1)
	세무		3	3			
	사회복지		6				6
	공업		2	2			
	녹지		2	2			
	시설		11	11			
	운전		3	3			
	사무운영		1	1			
	행정·사서		1	1			
	행정·시설		3	3			
	보건·의료기술		1			1	
	시설·방재안전		1	1			

직급 ·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별정직 계			4	4			
별정직	5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8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관계법령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및 사무조정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본청 기구조정: 6국 2실 25과 → 6국 2실 28과(증 3과)

나. 국·실·과장의 직급을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다. 본청 실·과의 분장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실
(전화 : 042-608-6042, FAX : 042-608-3811, E-mail : almost52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실 담당자 조연진 (전화: 042-608-6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장·실장·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 행정기관”을 “국장·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사무분장에 관하여”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장을 보좌하며”를 “국장·보건소장을 보좌하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국장·보건소장·실장·과장·동장을 보좌하게 하고,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인구정책과장·문화관광체육과장·미디어홍보과장”을 “미래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체육과장·미디어홍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통합돌봄과장·생활보장과장·어르신장애인과장·가족친화과장”을 “통합돌봄과장·생활보장과장·노인장애인과장·가족친화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농생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을 “기업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을 “도시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주택경관과장·신청사건립과장”을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공공청사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을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을 “교통과장·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을 “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사업소”를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앞의 “제5장 하부행정기관”을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실장·과장(사업소장 포함)”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를 “보건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동”을 “본청·직속기관 및 동”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시설관리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의”를 “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구의 사업소 및 동의”를 “동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각 실장·과장, 직속기관·사업소·동장”을 “본청 각 부서장·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당직업무 담당과장”으로, “운영지원과로”를 “당직업무 담당부서로”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당직업무 담당국·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운영지원과”를 “당직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제24조 중 “운영지원과장”을 “복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중 “운영지원과”를 “당직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운영지원과 직원과 각 주무실·과”를 “당직업무 담당부서 및 각 주무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미디어홍보과와 통신업무”를 “통신업무”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직주무부서”를 “당직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당직업무 담당부서에 당직업무”로, “당직 주무부서에서는”을 “당직업무 담당부서에서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각 실·과”를 “부서”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각 실장·과장, 직속기관·사업소·동장”을 “본청 각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복무관계업무”를 “복무업무”로 한다.

별표 중 “시설관리사업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하부행정기관(동)”으로 하고, 비고 중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를 “해당기관”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장기요양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어르신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 총괄부서의 장
- 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
-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 총괄부서 담당팀장
-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주무팀장

제2조제1항제3호 중 “회계업무”를 “물품출납업무”로 하고, 같은 호 중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과”를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속기관·사업소는 직속기관·사업소”를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 중 “실장·과장”을 각각 “부서 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실장·과장”을 “부서 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실장·과장”을 “부서 장”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을 각각 “의회·직속기관·동”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의회사무과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를 “의회사무과장·직속기관의”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택경관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량정수 배정 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 경형, 다목적, 그밖에 승용차
구 본청	26대	1대 (구청장 전용)	2대 (부구청장 1대, 일반업무용 1대)	23대
구 의회	1대	1대 (의전용)		
보건소	3대		1대	2대
동행정복지센터	12대			12대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를 “부서에”로,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간”을 “부서장 간”으로,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를 “부서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장”을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장”을 “부서장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실장·과장, 직속기관, 사업소”를 “부서”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이”를 “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를 “구가”로 한다.

제4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장, 실장·과장급”을 “국장 및 5급”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 및”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장·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장·과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대덕구청장·의회사무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을 “대덕구청장·의회사무과장·직속기관장·동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담당실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 직 명	본 청	구의회	제1관서	기타관서·임시관서	동
회 계 책 임 관	회계업무 담당국장				
징 수 관	세입업무 담당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분 임 징 수 관	지방세업무 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담당과장		직속기관의 부서장		
재 무 관	회계업무 담당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회계업무 담당과장,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직속기관의 부서장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 담당국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부서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구청장				
부 채 관 리 관	소관 부서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통 합 지 출 관	회계업무 담당과장				
지 출 원	지출업무 담당팀장	의정팀장	지출업무팀장, 지출업무팀장이 없는 관서는 지출업무 담당주사보		동장이 지정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 담당과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소관 부서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세입업무 팀장	세입업무팀장	서무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팀장, 재무업무 팀장이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담당 주사보	동장이 지정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
일상경비출납원	각 부서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각 부서장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서무업무 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또는 서무업무 담당팀장(자)	지출원이나 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 담당자	지출업무 담 당 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한다.				

별표 2의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보건소, 시설관리사
업소, 동”을 “보건소, 동”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경제과”를 “기업에너지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실장·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속기관·사업소·동”을 “직속기관·동”으로, “직속기관·사업소의”를 “직속기관의”로, “실장·과장)”을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본청·직속기관·사업소”를 “본청·직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5호 중 “실장·과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실장·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실장·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⑯ 대전광역시 대덕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실장·과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선임직원”을 “소속직원”으로, “실장·과장(사업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과”를 “부서장(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해당 부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실장·과장(사업소장, 동장)”을 “부서장(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실·과”를 “부서”로 한다.

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으로 한다.

제17조의1 및 제17조의2를 각각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으로 한다.

제17조의2(종전의 제17조의1)의 제목 “의1(감사처분실무협의회)”을 “(감사처분실무협의회)”로 한다.

제20조 중 “실장·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장·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실장·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⑱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장·과장, 사업소장,”을 “각 부서장 및”으로 한다.

제4조 중 “사업소·동에”를 “동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의 <u>국장·실장·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u>국장·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u> ----- ----- <u>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u> ----- -----.
제2조(직무) 국장·실장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u>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 <u><신 설></u>	제2조(직무) ① ----- ----- <u>국장·보건소장을 보좌하며,</u> -----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소속 6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국장·보건소장·실장·과장·동장을 보좌하게 하고,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u>
제3조(보좌기관) <u>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u>	제3조(보좌기관) <u>구청장</u> ----- ----- ----- -----

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
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미래전략국) 국장은 지방서
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보하고, 인구정책과장·문
화관광체육과장·미디어홍보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
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
다.

제8조(복지돌봄국) 국장은 지방서
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보하고, 통합돌봄과장·생
활보장과장·어르신장애인과장
·가족친화과장은 지방행정사
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으로 보한다.

제9조(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
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으로 보하고, 경제과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
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
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농생명과장은 지방행정사
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

제6조(미래전략국) -----

----- 미래교육과장은 지
방행정사무관으로, 전략사업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체육
과장·미디어홍보과장-----
--.

제8조(복지돌봄국) -----

----- 통합돌봄과장·생
활보장과장·노인장애인과장·
가족친화과장-----
-----.

제9조(경제환경국) -----

----- 기업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경제산업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
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
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
무관·지방공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
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
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으로 보한다.

제10조(도시녹지국) 국장은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
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
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
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경관과장·신청사건립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
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
관으로 보하고,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
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
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
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

-----.

제10조(도시녹지국) -----

----- 도시사업과장은 지
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
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
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공
공청사과장-----.

제11조(안전교통국) -----

----- ·지방공업사무
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
----- 교통
과장·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
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

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보건행정과장은 <u>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u>, 건강정책과장은 <u>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u> 보한다. ③ (생략) 제4장 <u>사업소</u> 제15조(시설관리사업소) <u>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u>은 <u>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u> 보한다. 제16조(분장사무) <u>소장이 분장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u> 제5장 <u>하부행정기관</u> 제17조 · 제18조 (생략)	-----. 제1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u> ----- ----- -- <u>지방보건사무관 · 지방의료기술사무관 · 지방의무사무관</u> - ----- -----.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u>하부행정기관</u> <삭제> <삭제> <삭제> 제15조 · 제16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	--

[별표 1] 구 본청 실장·과장의 분장사무(제1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사무 전결 기준(제4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생략)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구 본청의 국장, 실·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